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001

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임광현·박홍배·정성호

이건태 • 이정문 • 정일영

이기헌 · 조계원 · 황정아
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육아 관련 용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.

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서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 소 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기저귀, 분유, 이유식, 의복·신발, 카시트 및 도서 등의 영유 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 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 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기저귀, 분유, 이유식, 의복·신발, 카시트 및 도서 등 영유아용 물품으로서 그 종류와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기저귀, 분유, 이유식, 의복·신발, 카시트 및 도서 등 영유아용 물품으로서 그 종류와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 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제26조(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) ① 다음 각 호의 대한 면세) ① -----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 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~ 20. (생략) 1. ~ 20. (현행과 같음) 21. 기저귀, 분유, 이유식, 의복 <신 설> •신발, 카시트 및 도서 등 영유아용 물품으로서 그 종류 와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27조(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) 제27조(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----. 1. ~ 15. (생략) 1. ~ 15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16. 기저귀, 분유, 이유식, 의복 ·<u>신발, 카시트 및 도서 등</u> 영유아용 물품으로서 그 종류 와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